

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

제정 2025. 12. 31. 조례 제381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가 주최·주관하거나, 출연·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예산 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행사”란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, 문화제, 예술제, 체육대회, 경연대회, 공연 등을 말한다.
- “행사예산”이란 시가 주최·주관하여 직접 집행하거나,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으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라 행사 운영비, 출연금,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.
- “홍보물”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현수막, 전단지, 리플릿, 포스터, 홍보 책자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을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5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공개 내용)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

2.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,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

제5조(공개 의무)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

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.

제6조(공개 방법) ① 홍보물에 예산을 표기할 경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.

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: 면적의 100분의 5 이상

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

2.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: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

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